

#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( 제정) 2012.06.15 조례 제1046호  
(일부개정) 2015.10.26 조례 제1409호  
(일부개정) 2016.10.17 조례 제1549호  
(일부개정) 2019.07.15 조례 제1891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제2항,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제1항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,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 및 명칭)** ①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은 아산시장이 한다.  
② 장난감 도서관의 명칭은 「아산행복드림 장난감 도서관」(이하 “장난감 도서관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3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 
1. "장난감 도서관"이란 장난감·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·대여·대출(이하"대여"라 한다)하는 시설을 말한다.  
2. "대여자료"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·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.  
3. "회원"이란 장난감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.

**제4조(회원)** ①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  
② 회원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아산시에 소재한 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, 어린이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여야 한다.

**제5조(회원의 의무)**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, 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.  
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.

**제6조(이용제한)** 아산시장은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.  
1. 자료, 비품,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자  
2.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재 대여한 자  
3. 대여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자

**제7조(연회비 및 대여료)** ①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고, 연회비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  
② 장난감 대여료는 별표1(대여료 기준표)에 의해 부과한다.  
③ 장난감 도서관 개인이용자의 일일 이용료는 1인당 2,000원이며, 회원은 무료로 이용한다. 단, 보육 관련 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1,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.  
④ 가입회원이 중도에 회원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가입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 개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하며,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회비는 환급하지 않는다.

**제8조(회비의 감면)**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.  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(개정

2015.10.26)
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심한 장애 [개정 2019. 7. 15.]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 가정
4. 1가구 3자녀 이상 증명서류를 소지한 가정
5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 가정

**제9조(대여기간 및 연체료 등)** ① 회원은 1회 2점을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, 1회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.

② 대여물품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, 연체된 장난감 1점당 1,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이용시간)** 장난감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
1. 평 일 : 10:00 ~ 18:00(목요일은 20:00까지 연장)
2. 토요일 : 10:00 ~ 16:00

**제11조(휴관일)** ① 장난감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
1. 매주 일요일, 월요일
  2. 법정 공휴일
  3.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
-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장난감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12조(장난감 기증)** 시장은 보다 많은 어린이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,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

**제13조(운영의 위탁 등)** ① 시장은 장난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,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운영의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는 「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(개정 2016.10.17)

③ 운영위탁 시 자기자본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장소(건물)를 제공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우선 협상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4조(운영지원)**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,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### **부칙(조례 제1046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칙(조례 제1409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칙(조례 제1549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칙(조례 제1891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